

였으므로 매도법인인 당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

회 신

귀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및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여 공장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IMF 영향 등으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주거래 채권은행에서 귀사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업회생지원업무규정에 의거 그 가동중인 공장용 부동산을 자산, 부채, 종업원 등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타사에 양도시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단서규정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규정의 “정당한 사유”에 해당되어 기히 경감된 취득세·등록세가 주장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.
(세정 13407-875, 2000. 7. 8)

5. 매매계약 해제시 취득세 납세 의무

【질 의】

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(즉 명의원상복귀) 이행을 조건으로 취득세 납부 의무의 소멸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었습니다.

사실상 질의당시에는 판결문의 주문과 같이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의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, 그 결과로 ○○구청은 판결문 주문대로(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)의 이행조건으로 취득세 납부말소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를 이행하여 주겠다는 답변에 즉시 이행했으나 막상 담당관들은 부과 취소를 처리해주고 싶고 또한 해줘야 하겠는데 단지 원인무효에 관한 적용의 적부 여부 및 동일 성격의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없고 사후의 책임소재 및 감사문제 등등의 문제까지를 고려하여 자체 판단 처리 불가로 답변하며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오다, 반복되는 저의 처리독촉에 대해 오히려 민원인인 저에게 인터넷 사이트상으로 질의를 하여 확실한 처리 근거를